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의 기준은?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별표3에 규정되어 있음.
○ 인하된 도로점용료를 동조례를 개정 인상할 수 있는지?	○ 동 조례는 도로법 준용으로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일부 개정 타당.

나. 반대토론 : 없 음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의결(만장일치)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8
의 결 년 월 일	95. 5. 30 (제38회)

제출년월일 : 1995. 5. 1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이유

○ 94. 9. 16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전기관 및 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

을 합하여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한다.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3호중 “간관”을 각각 “간관(들출간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제3호중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한다.

<별표1>의 비고란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권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제3조의2 다음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량	기준단위					점용량	기준단위	
1(생략)						1(천행과 같음)					
2 수도	수도관	직경 0.1미터이하			150	2 수도	수도관	직경 0.1미터이하			150
관 하수	하수도	직경 0.1미터초과			300	관 하수	하수도	직경 0.1미터초과			300
도관 가	관 가스	0.2미터이하				도관 전	관 전기	0.2미터이하			
스관 송	관 송유	직경 0.2미터초과			600	기관 전	관 전기	직경 0.2미터초과			600
유관 기	관 송열	0.4미터이하				기 통 신	통 신 관	0.4미터이하			
타 이와	관 전기	직경 0.4미터초과	길 이	1년	900	관 가스	가스관	직경 0.4미터초과	길 이	1년	900
유 사 한	관 통신	0.6미터이하	1미터			관 송유	송 유 관	0.6미터이하	1미터		
것	시설관	직경 0.6미터초과			1,200	관 기타	송 열 관	직경 0.6미터초과			1,200
		0.8미터이하				이와 유	통신시설	0.8미터이하			
		직경 0.8미터초과			1,500	사한 것	관	직경 0.8미터초과			1,500
		1.0미터이하						1.0미터이하			
		직경 1.0미터초과			3,000			직경 1.0미터초과			3,000
	기타의관	직경 0.1미터이하			200		기타의관	직경 0.1미터이하			200
		직경 0.1미터초과			450			직경 0.1미터초과			450
		0.2미터이하						0.2미터이하			
		직경 0.2미터초과			900			직경 0.2미터초과			900
		0.4미터이하						0.4미터이하			
		직경 0.4미터초과	길 이	1년	1,350			직경 0.4미터초과	길 이	1년	1,350
		0.6미터이하	1미터					0.6미터이하	1미터		
		직경 0.6미터초과			1,800			직경 0.6미터초과			1,800
		0.8미터이하						0.8미터이하			
		직경 0.8미터초과			2,250			직경 0.8미터초과			2,250
		1.0미터이하						1.0미터이하			
		직경 1.0미터초과			4,500			직경 1.0미터초과			4,500

현			행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량	기준단위	
3광고탑	광 고 탑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광 고 판	광 고 판	(1월미만점용)	1제곱미터	1 일	100
간판 사	간판				
설 안 내			표시면적		
표지 현		기 타	1제곱미터	1 년	15,000
수막 아					
취 기타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 년	12,500
이와유사		제사나 종교행사의	점용면적		
한 것	현수막	용도로 임시설치한것	1제곱미터	1 일	50
		기타의 용도			100
	아 취	도로 횡 단	표시면적		30,000
		기 타	1제곱미터	1 년	15,000
4(생략)					
5(생략)					
6(생략)					
7(생략)					
8(생략)					
9(생략)					
10(생략)					

※ 비 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 (시설)

개			정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량	기준단위	
3광고탑	광 고 탑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광 고 판	광 고 판	(1월미만점용)	1제곱미터	1 일	100
간판(돌	간판(돌				
출간판울	출간판울		표시면적		
포 함 한	포 함 한	기 타	1제곱미터	1 일	15,000
다) 시설	다) 시설				
안내 표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 년	12,500
지, 현수		제사나 종교행사의	표시면적		
막, 이취	현수막	용도로 임시설치한것	1제곱미터	1 일	50
기타 이		기타의 용도			100
와유사한					
것	아 취	도로 횡 단	표시면적		30,000
		기 타	1제곱미터	1 년	15,000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7(현행과 같음)					
8(현행과 같음)					
9(현행과 같음)					
10(현행과 같음)					

※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5의2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현행	개정안
6. (생략) 7. (생략) (신설)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3조의 3(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2]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합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